

NSLI.80

인권정보자료실

NSLI.80

『유엔인권이사회 결정 수용촉구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토론회

자 료 집

◇ 일시: 1999년 2월 26일 오후3시

◇ 장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Korean National Congress for Reunification)

(110-740)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2호

전화 (02)708-4981 팩스 (02)708-4982 E-mail:kncr@chollian.net

자료집 순서

▶ 토론자 명단

▶ 발제문

-박태훈 사건 개요 및 유엔인권이사회 통보경과-

▶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 최근 국가보안법 관련 기사

▶ 김대중 정권 1년,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토 론 자

- ▶ 발제: 박태훈(전 재미한국청년연합 회원)
- ▶ 사회자: 이승환(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
- ▶ 토론자:
 - 김거성(민주개혁국민연합 기획조정위원장)
 - 김낙중(전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소장)
 - 서경원(전 국회의원)
 - 양동화(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
 - 이수일(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이장희(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경악권통일협회
 - 이준용('영남위원회'사건 울산시민대책위원회)
 - 이태섭(현대경제연구소)
 - 이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임방규(장기수 출소자)
 - 조국현(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정책위원장)
 - 조성우(민화협 집행위원장)

박태훈 사건 개요 및 유엔인권이사회 통보 경과

1. 사건 개요

- 박태훈은 명지대학교 재학 중 1983년 1월 유학차 도미.
- 미국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 주립대학 재학 중 “광주항쟁 추모행사”에 자극 받고 국내 현실상황에 눈을 뜨게 되면서 당시 미국으로 밀항하여 정치적 망명을 준비하던 윤한봉을 주축으로 결성된 “재미 한국청년연합(한청련)” 활동을 하게 됨.
- 1989년 8월,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군 입대를 위해 귀국
- 1989년 8월 말, 백두산에서 판문점까지 이어진 “Korea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평화 대행진” 참석을 위해 방북했던 한청련 회원(방북자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참고조사 명목으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임의동행 식으로 연행.
- 안기부는 당시 임수경 방북사건에 대해 전대협 대표 방북이라는 북한의 “지령”이 <북한 → 재미한국청년연합 → 호주민족자료실 → 전대협>의 경로로 전달된 것으로 조작 발표.
임수경 방북 배후 관련으로 재미한청련의 박태훈과 호주민족자료실의 김진엽을 지목.
- 안기부의 “경로” 발표내용은 기소 또는 공판 과정에서 임수경 방북사건 관련 어느 누구에게서도 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허구였음이 드러남.
- 안기부/검찰은 언론 발표와는 달리 재미한청련이 이적단체이며, 이에 가입 활동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박태훈을 국보법 제 7조 1항 및 3항 위반으로 구속/기소.
- 1989년 12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징역 1년/집행유예 2년)로 석방. 고등법원 항소.
- 1993년 5월 항소심 육군고등군사법원 판결(항소기각).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 기간 중이던 1991년 군에 입대.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첩됨.) 대법원 상고.
- 1993년 12월 대법원 확정판결(원심 확정). 기상까지 4년 7개월

2. 유엔인권이사회 제소/통보 경과

- 1990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인권규약, 유엔 B규약)”에 가입. “선택의정서” 비준.
-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 사건에 대해 국내에서의 구제 조치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법정대리인(변호사 조용환)을 통해 동 사건을 인권규약 위반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키로 함.
- 1994년 8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자료 제출(대한민국 정부가 동 사건에 대해 인권규약 제 18조 1항, 제 19조 1, 2항 및 제 26조 위반하였음을 주장. 통보번호 628/1995)
- 1995년 8월,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측 입장 자료를 인권이사회에 제출.
- 1996년 7월, 유엔인권이사회는 본 통보내용을 허용하기로 결정.
- 1998년 10월, 유엔인권이사회 심의 종결. 견해 채택. 한국정부 및 대리인에게 결정사

(2차. 1994년 → 1995년)

항 통보.

3. 인권이사회 결정사항(견해)의 주요 쟁점, 내용 및 의의

- 제소내용 : 본 사건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대한민
국에 의해 침해 주장.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 7조 1, 3, 5항을 철폐하고, 이들 조항에
대한 폐지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까지 이들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이사회가 요구
할 것 등을 청구.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 및 적절한 보상 조치 요청.

- 정부측 입장 : '시간적요건', '안보를 위한 국보법 불가결',

- 유엔측 결정 내용 :

1)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 실천 행위가 국가안보에 어떠한 위협이 되었는지 정부측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실패했음 확인.

2) 정부측 주장이 인권규약 제 19조 3항의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제한(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의 건강 또는 도덕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한 허용)하는 데 충분치 못함 판단.

3) 피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은 인권규약 제 19조에 따라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

4) 정부측이 규약에 따른 의무보다 국내법 적용을 우선하는 것이 규약과 합치하지 않
음 확인.

5) 선택의정서(제 5조 4항)에 따라 본 사건이 인권규약 제 19조 위반 사실 인정.

6) 인권규약(제 2조 3(b)항)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포함하여 효과적
인 구제를 제공할 것 통보.

7) 이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을 90일 이내(3월 중순까지)에 인권이사회에 통보할 것
요청.

- 인권이사회 통보의 의의

1) 유엔 산하기구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이 난 국내 사건에 대해 "규약위
반"임을 결정/통보한 최초의 경우

2)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국내 및 국제적 분위기 형성의 단초 마련

국제연합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
관련번호: G/SO 215/51 KOREA (4)
ce/xb 628/1995

1998. 12. 4.

조변호사 귀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1998년 10월 20일자로 채택한 견해의 결정문을 전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사건 번호 제628/1995호와 관련하여, 귀하가 박태훈씨를 대리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이사회에 제출한 데 대한 것입니다.

확립된 관례에 따라 이 견해의 결정문은 일반에 공개될 것입니다.

경구

프란시스코 호세 아길라 우르비나 (서명)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 지원서비스 국장

조용환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대한민국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6-3 창림빌딩 2층

(표 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배포제한*

CCPR/C/64/D/628/1995

1998년 11월 3일

원 문 : 영 어

인권이사회

제64차 회기

1998년 10월 6일 - 1998년 11월 6일

견 해

통보번호 628-1995

통보자 : 박태훈 (대리인 조용환, 서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피해자 : 통보자

당사국가 : 대한민국

통보일 : 1994년 8월 11일 (최초 제출일)

주요결정사항 : CCPR/C/57/D/628/1995, 허용 결정, 1996년 7월 5일자

견해 채택일: 1998년 10월 20일

1998년 10월 20일, 인권이사회는 통보번호 제 628/1995에 대하여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라 그 견해를 채택하였다. 견해의 결정문은 이 문서에 첨부되어 있다.

[별 지]

* 인권이사회 결정에 따라 일반에 공개함.

[별 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인권이사회 견해

- 제64차 회기 -

통보번호 628/1995

관 련

통보자 : 박태훈 (대리인 조용환, 서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피해자 : 통보자

당사국 : 대한민국

제소일 : 1994년 8월 11일

허용 결정일: 1996년 7월 5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인권이사회는

1998년 10월 20에 열린 회의에서

박태훈씨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통보번호 628/1995호에 대한 심의를 중결하고

통보의 제출자, 그의 대리인 및 당사국이 이사회에 제공한 모든 문서 자료들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채택하였다:

* 이 통보의 심사에 참가한 이사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프라플라칸드라 바그와티(남), 버겐탈(남), 크리스틴 샬렛(여), 로드 콜빌, 음란 엘 샤페이(남), 엘리자벳 에바트(여), 필라 가이탄 드 품보(여), 액카트 클라인(남), 데이빗 크렛츠머(남), 라쥬머 탈라(남), 쉐실리아 메디나 퀴로가(여), 홀리오 프라도 발레호(남), 마틴 셰이닌(남), 맥스웰 알든(남), 압달라 자키아(남)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견해

1. 이 사건의 통보자는 한국인 박태훈(남)으로, 1962년 11월 3일생이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에 의한 규약 제18조 1항, 제19조 1, 2항 및 제26조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대리인은 서울에 있는 덕수합동법률사무소의 조용환씨이다. 대한민국은 규약 및 선택의정서에 1990년 7월 10일 가입했다.

통보자가 제출한 사실관계

2.1 1989년 12월 22일,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통보자가 1980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3항¹⁾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통보자는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재판기간중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였고, 이에 서울 고등법원은 사건을 육군 고등군사법원으로 이송하였다. 1993년 5월 11일, 고등군사법원은 통보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통보자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1993년 12월 24일, 대법원은 원심으로 형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통보자는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조치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1990년 4월 2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5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통보자는 비록 헌법재판소가 제7조 3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조항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1항과 5항의 짜집기이므로 3항 역시 합헌 결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2.2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내용은 그가 1983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 주립 대학에서 유학중 재미한국청년연합(이하, YKU)에 가입하여 활동했다는 데 있다. YKU는 미국 단체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한과 북한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당시 대한민국의 군사정부와 그 정부를 지지

1. 국가보안법은 1991년 5월 31일 개정되었다. 그러나 통보자에게 적용된 것은 1980년 제정된 법으로, 제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작성자의 영문번역):

- (1항) 생략
- (3항) 생략
- (5항) 생략

하는 미국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통보자는 한청련의 모든 활동은 평화적인 것이었으며, 미국법을 따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3 재판부는 YKU가 북한 정부의 활동에 동조하고 고무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적단체"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단체에 가입한 통보자의 혐의는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위반에 해당되었다. 나아가 통보자가 미국 내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석하여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을 주장한 사실은 북한에 동조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위반이 되었다. 통보자는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대로라면 한청련 회원은 모두가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4 대리인이 제출한 통보자 사건의 판결문 번역에 따르면 통보자가 미국에서 몇몇 평화적 시위와 기타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한 정치적 구호 및 견해에 대한 자신의 지지 또는 동의를 표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구형과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2.5 통보자는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강요된 자백에 근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보자는 영장없이 1989년 8월말 체포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20일간 조사를 받고, 기소 때까지 30일간을 더 구금되어 있었다. 통보자는 통보내용에서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한국의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데 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2.6 대리인은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규약가입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고등군사법원과 대법원은 규약 가입 이후에 이 사건을 심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규약을 적용하였어야 하며, 해당 법원은 규약의 관련 조항들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보자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규약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했던 최초보고서 심의 후에 발표한 인권이사회의 권고문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권고문에서 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하였다(CCPR/C/79/Add.6); 그는 또 대법원이 인권이사회가 지적한 권고내용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야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3년 12월 24일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따라 설치된 인권이사회에서 소론과 같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보안법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따라서 피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소론 주장과 같이 국제 인권규약에 위배된다거나 형평을 잃고 모순되는 법 적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통보자의 영문번역)

통보내용

3.1 통보자는 자신이 남한의 상황과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도 남한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북한에 동조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남한당국이 간주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통보자는 이러한 추정이 잘못된 것이며 남한 당국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2 통보자는 자신에 대한 유죄선고가 규약 제18조 1항, 제19조 1, 2항 및 제26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비록 특정한 단체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유죄판결의 진정한 이유는 자신과 다른 YKU 회원들이 남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정부의 정책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집단에 대하여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규약 제26조를 위반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통보자는 대한민국의 유보 때문에 규약 제22조의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다.

3.3 통보자는 자신의 사상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등을 대한민국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이사회가 선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3항 및 5항을 철폐하고, 이들 조항에 대한 폐지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까지 이들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이사회가 요구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그리고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기를 요청하며, 겪었던 고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당사국의 견해 및 대리인의 의견

4.1 1995년 8월 8일 제출한 내용을 통해 당사국은 통보자에 대한 사건의 범죄사실들이, 특히, 다른 반정부적인 견해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군사독재를 통해 남한을 조종하고 있다는 견해에 동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4.2 당사국은 이 통보가 국내의 모든 구제조치들을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통보자가 영장없이 체포되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제는 긴급 구제조치를 통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당사국은 만일 통보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또는 그를 기소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3 당사국은 이 통보가 규약 및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4 끝으로, 당사국은 1992년 1월 11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3항의 합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제소가 제3자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5.1 당사국이 제출한 내용에 대한 의견에서 통보자의 대리인은 당사국이 통보자의 주장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리인은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통보자의 권리침해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인은 재심에 관한 문제는 통보자의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한다. 대리인은 통보자에 대하여 적용된 증거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들에 따라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받아서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통보자의 활동은 사상,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5.2 이 통보가 시간적 요건으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대해 대리인은 비록 통보자의 사건이 규약 및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기 이전에 시작되었지만, 고등군사법원과 대법원은 가입한 시점 이후에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규약이 적용되며, 이 통보는 허용된다는 것이다.

5.3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3항의 합헌 여부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 중이라는 당사국의 주장에 대해 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국가보안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1990년 4월 2일에 내린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후 같은 사안에 대한 제소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모두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선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은 무의미하다고 대리인은 주장한다.

이사회 의 허용여부 결정

6.1 이사회는 제57차 회의에서 이 통보의 허용여부를 심의하였다.

6.2 이사회는 이 통보가 주장하고 있는 사건이 규약 및 선택의정서에 당사국이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당사국의 주장을 주목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통보자에 대한 1심 판결이 규약 및 선택의정서에 한국이 가입하기 이전인 1989년 12월 22일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은 규약에 가입한 날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회는 통보자가 주장하는 규약위반이 당사국의 규약 및 선택의정서 가입 이후까지 계속되었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이 통보에 대한 심사는 시간적 요건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6.3 이사회는 또 통보자가 당시 가능했던 국내의 모든 구제조치들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했다. 이사회는 당사국이 제안한 일부 구제조치들이 이사회에 제출된 통보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통보자에 대한 재판의 쟁점과 관련된 것에 주목했다. 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합헌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여전히 심리중이라는 당사국의 주장에도 주목하였다. 이사회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미 1990년 4월 2일에 처음으로 위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래 그 후로도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통보자의 주장에도 주목했다. 이사회에 제시된 자료들을 근거로 볼 때, 이사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2(b)항이 의미하는 범위안에서 통보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6.4 이사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2(a)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 다른 국제적인 조사 또는 조정절차에 따라 심의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6.5 이사회는 통보자가 제출한 사실들이 규약 제18, 19 및 26조에 따라 본안의 심리를 받을 필요가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7. 이에 따라 1996년 7월 5일, 인권이사회는 이 통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리인의 의견

8.1 당사국은 의문의 여지가 없게 사실관계를 밝힌 적절한 조사를 거쳐 국내법을 위반한 범죄로 통보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국은 안보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상과 견해를 표현하는 자유를 포함하여 모든 기본 인권을 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국은 그러나 민주제도의 틀을 보존하는 우월한 요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8.2 한국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문화한 조항이 있다(제37조 2항).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 또는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당사국에 따르면 북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불가결하다는 여론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국은 폭력성을 띤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다. 당사국에 따르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정책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인 YKU 회원으로서 통보자가 한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는 데 위협적인 요소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8.3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에 규약의 조항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통보자의 주장에 대해 당사국은 “통보자는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규약의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규약에서 인정한 개인의 특정한 권리보다 국가보안법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9.1 당사국의 견해에 대한 의견에서 대리인은 당사국의 불확실한 안보상황과 통보자가 자신의 사상, 견해,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리인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YKU 또는 통보자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당사국이 증명하지 못했으며, YKU 또는 통보자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정책에 동조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당사국은 YKU 또는 통보자의 활동이 국가안보에 어떠한 내용의 위협을 주었는지에 대하여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대리인은 주장하였다.

9.2 통보자는 자신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생 신분으로 YKU에 동참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는 활동을 하면서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또는 자기 나라의 안보를 위협에 빠뜨릴 어떠한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리인에 따르면 통보자가 표현한 견해에 대해서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 반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표현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표출되는 한 결코 형사처벌에 의하여 억압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맥락에서 대리인은, 정부가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9.3 대리인은 통보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 사상 및 평화적 표현 등으로 인해 처벌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규약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앞에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대리인은 그렇게 된 이유가 모든 시민들이 헌법 제21조에 의해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가운데, 통보자는 대한민국 정부당국자들과는 다르다고 추정되는 정치적 견해를 가진 YKU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해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9.4 통보자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상황에 관하여 제출한 보고서²⁾를 인용하고 있다. 통보자는 이사회가 정부에 대해 이 통보에 대한 이사회 의견의 견해와 그 한국어 번역문을 관보에 게재토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사회가 심의한 쟁점과 진행절차

10.1 인권이사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1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이 통보 내용을 심리하였다.

10.2 이사회는 통보자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규약 제22조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 조항의 위반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리인은 규약 제22조가 헌법을 포함한 한국법에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대한민국의 유보 또는 선언을 지적하고 있다. 통보자의 통보 내용과 주장이 규약의 다른 조항에 근거하여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는 그 유보 또는 선언의 효과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사회가 판단해야 할 쟁점은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통보자가 받은 유죄판결이 규약 제18, 19 및 26조에서 규정한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10.3 이사회는 규약 제19조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음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의한 제한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가)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공의 건강 또는 도덕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모든 민주적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 권리의 실현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 그 정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그와 같은 제한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여전히 통보자에게 가해진 조치들이 규약에서 말하는 목적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는 당사국이 나라의 일반적인 상황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언급하면서 국가안보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사회는 통보자에 의한 표현의 자유 행사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위협의 정확한 성격을 당사국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실패했으며 당사국이 내세운 어떠한 주장도 제19조 3항에 따라서 통보자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제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사회는 통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문들을 세밀히 검토하였으나, 이들 판결문 및 당사국의 주장 어느 것도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제19조 (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목적들 가운데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표현행위와 관련된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은 규약 제19조에 따라 통보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해야 한다.(밀줄은 번역자가 붙인 것임. 이하 모두 같음.)

10.4 이런 맥락에서 이사회는 "통보자는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규약의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규약에서 인정한 개인의 특정한 권리보다 국가보안법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당사국의 주장을 검토한다. 이사회는 당사국이 규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규약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규약이 인정하는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을 지적한다. 당사국은 또한 이들 권리를

2. E/CN.4/1996/39/Add.1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또는 그밖의 조치들을 강구했어야 한다. 이사회는 당사국이 규약에 따른 의무보다 국내법의 적용을 우선하는 것은 규약과 합치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사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4조 (3)항에 따라 비상사태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규약의 일부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일이 없음을 지적한다.

10.5 이상에서 인정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규약 제18조 및 제26조를 위반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11. 인권이사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라 이사회에 제출된 사실관계가 규약 제19조에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다.

12. 규약 제2조 3 (b)항에 따라 당사국은 박태훈씨에게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데 대한 적절한 배상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3.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당사국은 규약의 위반이 일어났는가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권한을 승인하고 규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 영토안에서 관할권아래 있는 모든 개인들에게 규약이 인정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또한 규약위반이 일어났다고 인정될 경우 효과적이고 집행할 수 있는 구제조치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하여, 이사회는 당사국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사회에 견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한다. 또한 당사국이 이사회에 견해를 번역하여 공개하고, 특히 사법부에 이사회에 견해를 통보할 것을 요구한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채택하였으며, 원본은 영어임. 또한 추후에 유엔총회에 대한 연차보고서의 일부로 아랍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로도 발행할 것임.]

보안법 보완 검토

국민회의 정책기획단 발족 의견수렴

안법 정책기획단을 발족해 각계의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의 이강원 임장은 현행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단체 고문찬양)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가 『유엔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통보해 오는 등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보안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국

가보안법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정책기획단 발족 시기에 대해서는 ▲자민련과의 관계 ▲남북관계 ▲대미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회의의 한 정책관계자는 『보안법 문제의 미묘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즉각 국가보안법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배기자〉

“아시아 국가들 통화가치 회복

세계경제위기 공포 몰아낸다”

佛 경제전문지 보도

【파리 11金佛日기자】 금융위기를 겪었던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 세계 경제 위기의 공포를 몰아내고 있다고 프랑스 경제전문지 라트리뷰인이 24일 보도했다.

라트리뷰인은 “최고 50%까지 떨어졌던 한국 원화가치가 최근 오름세에 따라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통화가

치 하락폭이 25%로 좁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태국 바트화도 54%까지 떨어졌던 통화가치가 30%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심지어 인도네시아 루피화도 통화치 하락폭이 83%에서 68%로 좁혀졌다고 말했다.

통화가치 오름세는 ‘아시아 국가의 이자율 하락과 함께 경기침체 시 부양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것’이라고

“보안법 7 조위반 처벌 인권규약 어긋나”

(동아, 98.11.14)

유엔인권이사회 지적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단체 찬양 고문)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박태훈씨(36) 사건에 대해 “박씨를 국보법 7조로 처벌한 것은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19조 2항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려 22일 외교통상부를 통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인권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95년 노동정의 조정법의 ‘3자 개입금지’ 조항이 인권규약에

위배한다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한국과 관련된 두번째 결정이다.

이사회는 이와함께 박씨에 대해 금전배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취하고 결정문을 번역해 공개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조치 내용을 90일 이내에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사회는 결정문에서 “한국 정부는 박씨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생긴 위협의 정확한 성격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

scoop@donga.com

社說

保安法문제 신중하게

국민회의는 보안법 일부 조항이 인 권규약 위반이라는 유엔 인권위원회 통보를 계기로 보안법 문제를 본격적 으로 검토할 모양이다. 국민회의가 보 안법을 어떤 식으로 고치려 하는지 지 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검토방향은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7조)와 회합 통신죄 등 일부 조항을 어떻게 할지에 모아지는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보안법을 잘못 손질하다간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다. 우리도 유엔 인권위의 지적처럼 보안 법 일부 조항이 인권보호의 보편적 잣 대에 위배되고, 「고무·찬양」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우 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보편성의 원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개별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특수성」 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세 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며 군사분 계선을 사이에 두고 1백만이 훨씬 넘 는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우리 체제가 자유로운 언로(言 路)를 보장하는 점을 악용해 우리 체 제를 전복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회의가 일부 조항 을 선불리 손대려 하는 것은 「안전하

지 못한」 실험이다. 개인의 기본권 이 상으로 국가안보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 체제의 「최대한 방파제」를 이 시점에서 낮추 는 것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아울러 보안법이 그동안 국제사회에 서 문제가 된 것은 법적용의 「자의성」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법 자체도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보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자의적인 법 적용 이었다. 그동안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 을 유지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이 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잘못이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 하기 때문에 나라 안팎에서 보안법 개 선을 촉구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지 금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인권 을 중시한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으 니 이 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할 가능성 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법의 운 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국 제사회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다. 금강산 관광 등으로 「주적(主敵) 개념」이 약화되고 있는데 보안법의 「이빨」마저 뽑아버린다면 과연 무엇으 로 「늑대」를 막을지 걱정이다.

보안법 7조 위반사건 유엔 구제결정

법무부 수용 거부

시민단체 반발

법무부가 박태훈(35)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의 인권규약(유엔 B규약) 위반과 피해자의 구제조처 결정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7일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씨 사건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의 결정사항 중 핵심내용인 △유사한 위반사례 재발 방지와 △금전배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상태이므로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이 없는 한 금전배상은 불가능하다"며 "유사한 위반사례 재발 방지도 이미 국보법의 확대해석을 금지하고 있어 국보법 개폐 등 다른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오는 3월 13일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법무부의 결정을 놓고 시민·인권단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의 핵심내용인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와 국보법의 엄격한 적용과 개폐 등을 통한 재발 방지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용환 변호사는 "현재 박씨 사건과

비슷한 국보법 사건에 대해 수없이 유죄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국보법의 적용과 집행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재발방지조치로 신공안정책을 내놓는 법무부의 태도는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미국 유학중 재미한국청년학생연합에 가입해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박씨 사건을 4년 동안 심리한 결과, "박씨를 국보법 7조로 처벌한 것은 유엔 B규약 제19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조치 등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김창석 기자

뉴스제공시각 : 02/12 18:44

출처: 한겨레신문 제목: [국가보안법]여, 국보법7조 개정검토

국민회의는 그동안 유엔 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를 받아들인 국가보안법 제7조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죄' 조항의 개정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청와대 당무보고에서 "유엔 인권위 등의 권고와, 사상·표현·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안팎의 비판을 고려해 법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여권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 대행은 또 국가보안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인 자민련 쪽과 조만간 실무협의를 거쳐 개정방향을 최종 조율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박홍업 국민회의 부대변인은 "국가보안법 중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 등 확대·유추해석 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할지, 아니면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개념을 명확하게 할지는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이택 기자

●● 99년02월12일18시44분 -한겨레- 제공 <http://www.hani.co.kr> ●●

뉴스제공시각 : 02/23 01:13

출처: 한겨레신문 제목: 국민회의, 국보법7조10조 개정키로

국민회의는 자의적 해석에 따른 인권유린 가능성이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죄)와 함께 제10조(불고지죄)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의 고위관계자는 22일 "당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대체 입법 방안도 검토하긴 했으나 안팎의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판단해 일단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7조와 10조를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23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자민련 쪽에 이 방안을 정식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무·찬양 관련 조항은 범죄 구성요건을 법에 명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승근 기자

●● 99년02월23일01시12분 -한겨레- 제공 <http://www.hani.co.kr> ●●

뉴스제공시각 : 02/24 10:55

출처: 중앙일보 제목: [김대통령 기자회견]한일관계·국가보안법개정

[인권위 및 국가보안법 개정]

-인권위원회 구성과 국가보안법 개정 방향은.

"인권위원회 구성에 관한 당초 법무부안은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예는 국제적으로 별로 없다. 대통령이 인권위를 관장하면 인권위가 권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법무부나 대통령이 관여 않고 자유로운 민간기구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 인권보장기구의 허점을 감시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명망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로 금년중 인권위를 출범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국가보안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공동 여당 내에서 논의를 진행시키는 단계에 있어 멀지 않아 태도를 밝히겠다.

뉴스제공시각 : 02/18 19:00

출처: 동아일보 제목: 여권,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삭제」 보안법개정 조율착수

국민회의가 국가보안법 제7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11일 이 같은 방침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데 이어 18일 부 터는 자민련과의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공동여당안이 마련되면 3월중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보법 7조 삭제에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유엔인권위원 회가 최근 국보법 7조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를 해온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또 이 조항이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논란이 제기돼 온데다 최근 현대그룹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의 방북과 금강산 관광 등으로 대북한 환경이 바뀌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남북대치상황에서 찬양고무죄를 폐지하는 데 따른 부작용과 보수층의 반발 등을 감안해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찬양고무죄를 극히 제한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거나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회의의 국보법 개정방침에 대해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현재 유보적인 입장이다. 자민련은 공식적인 당론을 정하지 않았지만 전면개정이 아닌 부분개정인 만큼 국민회의와의 협상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자민련내에서는 남북분단상황에서 찬양고무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거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은 편. 그러나 찬양고무죄 삭제에 따른 보완장치가 마련된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국보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여당 안을 보고 결정하겠다고며 여지를 남겼다.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은 “현재로선 개정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여당이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내놓으면 검토한 뒤 공식적으로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보법 개정의 관건은 찬양고무죄 삭제에 따른 보완장치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

뉴스제공시각 : 02/12 19:24

출처 : 동아일보 제목 : 국민회의, 보안법 부분개정 검토...청와대 보고

국민회의는 국가보안법을 대폭 개정해 민주질서 수호법으로 대체한다는 기존의 당론을 사실상 철회하고 부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회의는 그동안 위헌논란이 계속돼온 국가보안법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가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자민련측과의 협의를 통해 개정방향을 조율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11일 청와대 주례 당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침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자민련이 남북대치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어 법개정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회의 박홍엽(朴洪燁)부대변인은 “유엔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 7조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를 해옴에 따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이의 개정을 건의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자민련과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

뉴스제공시각 : 02/12 20:12

출처 : 조선일보 제목 : [사설] '고무 찬양 동조' 개정문제

국민회의가 국내 여건변화와 유엔 인권위 권고에 따라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을 상반기 중에 개정기로 할 모양이다. 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 수호법으로 대체기로 했던 기존의 당론을 폐기하고 위헌논란 소지가 있는 제7조 [반국가단체 고무 찬양 동조죄]만을 손질하기로 한 것은 [국가안보]와 [인권]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우리의 미묘한 현실을 나름대로 반영하려 노력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7조 1항)은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확대해석 또는 유추 해석된 사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위태롭게 하는 정]에 대한 판단은 수사관이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의해석, 유추해석, 확대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할 만큼 이 조항은 구체적

이지 못하고 명백하지도 못하다. 그런데 다 지금은 우리가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북한과의 접촉이 어느때 보다 확대된 상황이다. 금강산 관광으로 이미 1만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북한사람들과 접촉했으며 정부의 정경분리 정책으로 북한을 방문한 기업인과 개인도 수천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7조를 보다 구체화하고 명백히 하지 않으면 그것은 본래의 법취지에서 벗어나 악용되거나 오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정부에 대해 보안법 개정이나 폐기에 신중한 태도를 가져줄 것을 당부한 것은 북한이 아직도 대남적화 공작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마치 냉전이 끝난 것처럼 치다 보면 나라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구체화하고 명백히 하는 것은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이번 개정 움직임이 남북 고위급 정치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내세운 보안법 폐지요구와 맞물려 나왔다는 점에서 꾀꾀함을 금할 수 없다.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보안법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가혹하게 우리 체제 지지 동조를 처벌하는 북한 형법을 개정하는 등 북한이 상응한 행동을 취할 때 보안법 개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뉴스제공시각 : 02/12 20:20

출처 : 조선일보 제목 : [국민회의] 보안법 찬양-고무 처벌조항 개정 건의

국민회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 수호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넘기는 대신, 우선 유엔 인권위원회가 문제삼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등 처벌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올 정기국회 때까지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형 총재대행은 11일의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이 내용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박홍업 부대변인이 12일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유엔인권위가 보안법 7조가 인권규약에 위배된다고 우리 정부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개정을 건의했다}면서, {그러나 국가보안법중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 등 확대-유추해석 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할지, 아니면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개념을 명확하게 할지는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문제는 자민련과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며 아직 결정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공동여당인 자민련은 {국가보안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며 사실상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 개정을 위해서는 여당내에서의 정책조율부터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유엔인권위는 1월초 이 조항이 유엔인권규약 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정부에 이 조항으로 인한 처벌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권고했다.

(* 김민철기자 · mckim@chosun com *)

김대중 정권 1년,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

박래균(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1. 여전히 강력한 국민통제 수단

지난 해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뒤에서 권력의 권위주의적 요소들은 하나도 척결되지 않았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가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해서도 안되고, 군림하려 해서도 안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국가가 모든 '선과 진리의 잣대'를 쥐고 국민을 강제하려는 모습을 계속 확인해야 했다. 거리에서 모든 국민들을 불순한 범죄자로 취급하는 불심검문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정보기관들의 도감청은 오히려 증가했고, 경찰의 사찰카드가 실체를 드러냈고,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과거 정권 때처럼 '불순세력, 체제 전복세력'이라고 매도, 위협하는 것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국가폭력의 대명사는 국가보안법이다. 개인의 내면마저 통제하고, 국가가 제시하는 가치관과 입장에 반대하는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반국가사범, 또는 이적사범이 되어야 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만으로도 이 나라는 민주화 될려는 멀고도 먼 길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50여년의 역사 동안 국민들을 공포로 통치하는데 역대 정권의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되었던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표방하는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서도 여전히 악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한해 동안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개정조차 할 수 없었던 정부가 최근에는 7조의 개정을 말하고 있다.

사실 국가보안법은 그 법에 의해 구속된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의 문제는 전체 문제 중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양심수들의 존재는 대부분의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항하였다가는 감옥에 가는 길밖에 없다는 점을 수시로 확인시켜주는 실체 이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은 오랜 세월, 자기 스스로의 상상력을 발동하여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길들여졌으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입식의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은 위에 국가보안법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대학이나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권력은 항상 도전받지 않는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며,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사회의 경직성과 획일성을 강제하는 주요한 통치수단이였다. 여기에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수사권을 지닌 수사, 정보기관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강력한 국민통제 장치였다. 이들 기구들이 민주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사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는 사회 제반의 영역에 걸쳐서 국가보안법이 끼친 영향들을 일일이 검토하여야 한다. 그럴 때만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는 일목요연하게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제반 범주의 국가보안법 현상을 모두 따져보는 것은 오늘의 자리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간략하게 지난 해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 문제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 검토 과정에서 필자는 국가보안법의 남용 현상고 확인하였고,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이 무너져 내리는 있는 현실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지탱하는 이 사회의 강고한 저항세력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 양상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2. 98년 국가보안법 적용 양상

정부 출범 10개월째인 지난해 12월 23일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374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양심수 구속자 679명의 55%가 국가보안법 구속자란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현 정권 출범 8개월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310명이 구속되었던 것인데, 이는 김영삼 정권 초기 8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 67명보다 4배나 많은 수였다. 결국 김대중 정부도 역대의 정부처럼 국가보안법을 무기삼아 정치적 반대 세력인 학생과 노동자, 재야세력을 탄압하는데 혈안이 되었으며, 따라서 인권단체들의 '마구잡이식 구속'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급기야는 현직 민선단체장이 포함된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서는 3년 이상이나 불법도청과 몰래 카메라 동원해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반국가단체로 낙인찍는 일마저 저질렀다.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오남용의 방지를 수차례 정부가 약속했지만, 오히려 국가보안법 남용이 강화되었다.

김대중정권 출범 이후 구속자 현황 (98. 12. 23. 현재 민가협 조사)

* 월별 분류

| 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총 |
|-----|----|----|----|----|----|-----|-----|----|-----|-----|-----|-----|
| 구속자 | 1 | 13 | 31 | 84 | 91 | 111 | 123 | 90 | 58 | 38 | 39 | 679 |
| 국보법 | 1 | 7 | 18 | 53 | 55 | 72 | 57 | 27 | 33 | 17 | 34 | 374 |

* 적용범규별

| 국가보안법 | 특수공무집행방해 | 집시법 | 노동관계 |
|-----------|-----------|-------------|-------------|
| 374 (55%) | 18 (2.6%) | 201 (29.6%) | 191 (28.1%) |

조직사건은 총 14건이 발생했다. 이들 조직 사건들을 검찰의 주장에 의해 대별하면 북한과 연계된 조직과 자생적인 사회주의적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북한과 연계된 조직사건으로는 울산부산지역 이른바 영남위원회(15명), 부산 인제대 자주대오(11명), 울산대 자주대오(5명), 범민련(7명), 단국대 천안 자주대오(5명),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7명), 민족통일애국청년회(3명) 등이었다.

반면에 후자에 속하는 조직사건으로는 국제사회주의자(27명), 북부노동자회(8명),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9명), 진보민중청년단체연합(6명), 학생연대(4명), 항공대 학생연대(4명) 등이었다.

이들 조직사건 건수로는 이들 조직사건들이 거의 반반씩이지만, 구속자수로는 북한과는 관련없는 이적단체 구속자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적단체라고 하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를 문제삼기 보다는 사회의 변혁을 요구하는 권력의 '내부의 적'으로 돌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조직사건 중에서 범민련, 민애청, 북부노동자회, 안민청, 진보민청, 학생연대, 국제사회주의자 등은 이전부터 계속 국가보안법에 의해 침탈을 받아왔던 조직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꾀감 뼈먹듯이 필요할 때면 수사기관이 이들 조직을 적발, 구속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진보민청의 경우는 이전의 소속 산하 조직들이 모두 이적단체로 적발되었던 상황이었고, 이들을 통해 장기간 기획수사를 해오다가 마지막으로 진보민청 중앙을 국가보안법으로 읊아낸 것이었다. 또, 국제사회주의자들의 경우에는 91년 이후 무려 150여명이 같은 조직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것을 본다면 수사기관들에게는 이들 조직들이 자신들의 '철밥통'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먹이로 활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안양민청연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이 단체의 성격은 합법 시민단체로 전환되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여는 등의 이적활동과는 무관한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였다. 이런 무리한 법 적용은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이다. 영남위원회의 경우는 강령이나 조직체계 등을 입증할 증거라고는 출처 불명의 디스켓 한 장이었음에도 반국가단체로 법원이 인정, 중형을 구형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 조직사건 중 반국가단체로 구속된 영남위원회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의 혐의(7조)로 구속되었다. 조직사건에서만 아니라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 중 374명 중 영남위원회 15명을 제외한 359명이 모두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였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7조는 사실상 국가보안법 사건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도 이전과 다를 바 없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범주는 한총련 관련이었다. 한총련 관련 구속자는 총 16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26명은 한총련 출범식 관련이었고, 나머지는 한총련 불탈퇴 때문에 구속된 것이었다. 아무런 이유없이 단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검찰의 자의적 적용에 의해서 대부분의 한총련 학생들이 구속되었던 것이다. 지난해 10개월간 37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구속자가 바로 이들 한총련 학생들이었던 것이다.

이들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의 면면을 보면 사회적 하급력을 미치지 못한 학생이나 청년단체 성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문규현 신부를 구속한 뒤 곧바로 이례적으로 보석으로 풀어준 예나 노동절 집회 이후 정치연대 대표 오세철 교수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가 호지부처된 것에서 확인하듯이 사회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은 국가보안법 적용등으로부터 대체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는 공안기관들이 교묘하게 분리 적용한 결과였다.

3. 98년 국가보안법 적용에 결과에 대한 현상적 해석

①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수차례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국가보안법은 남용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늘어난 이유에는 과거처럼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때문이었다. 구체적인 활동이 없거나, 오랜 세월 합법적인 운동을 해온 경우에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무리한 구속을 자행했다. 특히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불탈퇴 이유로 이들을 구속한 것은 억지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② 북한보다는 '내부의 적'을 겨냥하는 것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적화야욕을 노리는 북한이라는 존재보다는 내부에서 '국가변란'을 획책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들도 모두 이적단체로 규정해 처벌했다는 점이다. 한총련의 경우도 겉으로는 북한과의 연계를 강조하지만, 사실은 노학연대 등을 두려워 한 공안세력들의 탄압방침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총련은 실업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기 위한 공안세력의 희생양으로 위치지워졌다고 보인다. 이런 경향성은 북한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③ 구속을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급력은 두려워하는 적용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갈수록 그 대상자들이 폭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즉, 학생이나 청년단체 등 비교적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경우들을 주 구속 대상자로 설정하고, 꾸준히 구속자들을 양산해왔다.

④ 결국 공안세력들의 실적 쌓기에 의한 국보법 구속자의 양산이었다. 특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국보법 구속자가 발생한 것은 공안세력들의 실적 쌓기를 통한 자기들의 밥그릇 지키기의 노력의 결과였다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공안세력들은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정권교체, 남북관계의 개선 등-으로 인해 자신들이 퇴출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입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구속을 남발하였던 것이다.

4. 무너져내리는 국가보안법

지난해 공안세력들의 무리한 구속자 남발 경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국가보안법의 위력은 점점 약화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들을 법원의 태도, 국제사회의 비난, 남북관계의 개선, 국민여론의 약화 등으로 보도록 하자.

전체적으로 법원은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서 공안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볼 부분이다.

지난해 4월 서울형사고법은 북한 영화 <꽃파는 처녀>등을 본 이유로 구속된 국가보안법 구속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해 5월 천리마 소속 6명에게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북한노래를 개작해 민중가요를 부르는 것은 북한을 고무찬양한 것이 아니며, 이적표현물을 만들었다 해서 이적단체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동아대 간첩단 사건, PC통신 관련 윤석진 사건 등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격한 법해석을 전제로 무죄판결을 내렸다(물론 <모내기>를 그린 화가 김학철씨에 대해서 대법원은 1,2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또,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97년부터 98년 8월까지 "경찰청 보안국과 안기부가 구속기소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168명 중 재판에 계류중인 59명을 뺀 109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12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 보안국의 경우 석방률이 평균 90% 이상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돼 공안기관의 기소를 인정하는 판결태도를 보이면서도 대체로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공안기관들의 무리한 법 적용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법원이 나름대로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신중한 태도로 판결에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지법은 지난해 11월 민애청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9명중 6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석방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91년 법 개정 이후 구속적부심에서도 단 한명의 석방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중요한 법원의 태도 변화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원이 태도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점차 존립기반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비난은 보다 더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유엔인권이사회의 박태훈씨 사건에 대한 결정은 남한 정부가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남북이 대치된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개정조차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즉, 이 결정은 이적단체에 가입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국가가 위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오히려 구속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결정과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현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나 현 정부 들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계속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는 점은 앞으로 현 정부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태도를 유지하는 데 난관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 금강산 관광에서 보듯이 남북간의 민간교류가 확대되는 상황도 국가보안법의 존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이점에 대해서는 발제 3을 참조 바람).

이런 조건들과 함께 국민여론도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것이다.

월간 '말' 6월호에는 김대중대통령과의 인터뷰기사가 실려 있는데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하여 김대중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즉 "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민여론이 그런 것을 바라겠느냐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여론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작년 11월 22일에 한겨레신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가보안법에 관한 공동 여론조사를 벌였다. 전국 거주 20살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여론조사의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 $\pm 3.7\%$ 이다.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 | 폐지 | 개정완화 | 현행유지 | 강화 | 기타/잘 모름 |
|------|-------|-------|-------|------|---------|
| 일반국민 | 7.7% | 70.5% | 11.6% | 7.3% | 2.9% |
| 변호사 | 27.5% | 65.4% | 4.6% | 0.7% | 2.0% |
| 법학교수 | 29.0% | 70.0% | | | 1.0% |

이와 같이 답변한 사람들 중 절반 정도가 국가보안법이 악용·남용되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국민=40.9%, 변호사=52.9%, 교수=63.0%) 또한 국가보안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이 현재도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왔다.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잘 모름 |
|------|-------|--------|-------|
| 일반국민 | 26.4% | 55.8% | 17.8% |
| 변호사 | 27.5% | 69.2% | 3.3% |
| 법학교수 | 18.0% | 77.0% | 5.0% |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국가보안법은 점차 현 정부 하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확고한 생각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조건들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염원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 이름이 무엇이든간에 민주주의와 인권과는 대립되는 국가 이데올로기 체제라는 것, 사상탄압을 통한 권위주의 체제의 유지체제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국가보안법이 변질되어 다시 우리를 옹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끊임없는 강화를 통해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 자체를 뿌리채 흔들어 놓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은 오래도록 우리를 다시 짓누를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공안기관들의 해체 및 민주적 개편 등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제반 조건들을 반국가보안법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결국은 국가보안법으로 자신들의 존립근거를 삼는 국가보안법 옹호세력과의 투쟁이며, 국민들을 누가 더 확실히 설득하느냐로 결판날 것이기 때문에 올해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